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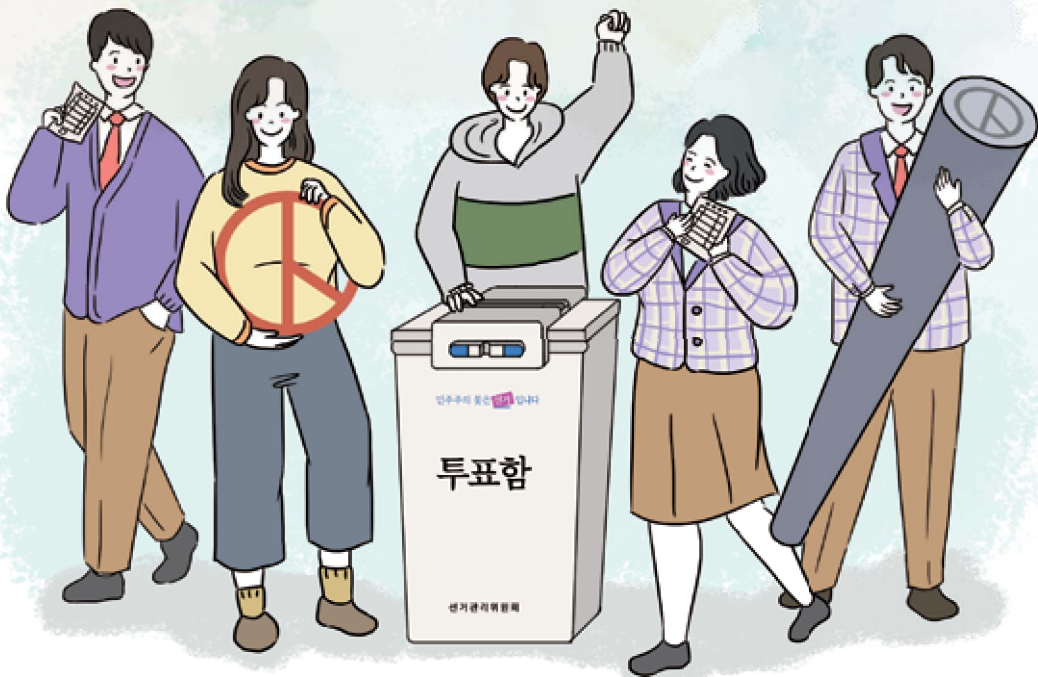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44-200007-14



18세 유권자용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도 '선거권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

contents

18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

- | | |
|---------------|----|
| 1. 유권자의 의미 | 08 |
| 2. 투표의 가치 | 10 |
| 3. 투표로 만드는 세상 | 12 |

선거, 어렵지 않아요!

- | | |
|--------------------|----|
| 1.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16 |
| 2. 선거과정 한눈에 보기 | 18 |
| 3. 투표, 이렇게 합니다! | 20 |
| 4. 개표와 당선인 결정 | 26 |





III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1. 선거운동이란?	32
2. 유권자의 선거운동	34
3. 불법 선거운동	36

IV 올바른 유권자가 됩시다!

1. 내가 꿈꾸는 세상	42
2. 선거정보 알아보기	46
3. 정당·후보자 분석하기	48
4. 내가 만들어 가는 선거문화	52



V 질문 있습니다!

1. 질문 있습니다!	58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일정표	62



18
세
유
권
자





18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

1. 유권자의 의미	08
2. 투표의 가치	10
3. 투표로 만드는 세상	12



18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



1. 유권자의 의미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도 '선거권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0여만 명의 새내기 유권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선거권 연령 기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법적으로 부여된 선거권으로 투표를 한다고 진정한 유권자가 되는 것일까요? 자신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진지한 생각이나 의견이 선거를 통해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유권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이 다르고, 그것을 어디에 어느 정도 사용할지에 대한 가치 기준도 다릅니다.

따라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토론과 협의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전 학년에 시행해야 할지, 입시 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그렇다면 세금은 어느 정도 거둬야 할지 등등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합의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대신할 대표를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선출합니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정치·사회의 구조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선택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토론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 내 생각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토론 주제는 꼭 사회 문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학교 내 문제들에 대해 학생회 활동 또는 학급 토론을 통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친구, 선생님, 부모님 모두 유권자의 교양을 길러 줄 좋은 학습 파트너입니다.

유권자의 교양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자세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대한
토론, 주장, 설득 능력



참여와 실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내 생각을 펼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에서부터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유권자의 교양을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지 이름만 유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2. 투표의 가치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 소중한 권리 행사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선 투·개표 등 선거관리를 위한 수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엄청난 선거물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수천만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하고, 14,000여개의 투표소, 3,500여개의 사전투표소와 250여개의 개표소도 설치해야 합니다. TV광고와 같은 선거홍보 비용 등까지 합쳐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약 3,284억 원의 선거관리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등에는 수백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며, 선거 후 일정한 기준 이상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을 돌려줍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말이죠. 이런데도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이 돈은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투표를 통해 파생되는 가치를 살펴보면 한 표의 가치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2020년 우리나라 예산은 512조 3천억 원입니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이 4년 동안 운영해야 할 재정규모는 2,049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에서 파생되는 투표가치는 약 4,7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대표를 잘못 선택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자질 없는 대표가 선택된다면 그만큼의 세금이 쓸모없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단순한 계산법이지만 여러분의 한 표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는 느껴지시죠?

물론 한 표의 가치를 어디 돈으로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거로 선출된 한 사람의 대표가, 그리고 그들이 모인 정당이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고 어떠한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투표의 가치는 앞서 환산한 액수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요? 당장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시대책 같은 교육 정책을 떠올리며 투표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한 표의 가치와 크기는 바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투·개표소



투·개표 인력



각종 홍보물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경비
3,284억 원



우리나라 1년 예산(2020년 기준)
512조 3천억 x 4년 =
2,049조 2천억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출되는국회의원 수
300명



정책
제시

법률
제정

예산
심의

국정
감사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



입시 정책



병역

3. 투표로 만드는 세상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 하나쯤이야’입니다. “나 하나쯤 투표하지 않는다고 선거결과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나 하나 투표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나 하나쯤 투표 안 해도 될 사람은 되겠지.”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역사를 바꾼 단 한 표’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150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석탄·철광석·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창고라고 불리는 ‘황금의 땅’ 알래스카! 지금은 미국 땅으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땅은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것입니다. 가격은 720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4억 원 정도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아이스박스를 비싸게 사는 어리석은 짓이다.”라며 반대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알래스카 매입 비준안은 상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금광과 유전이 발견되어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일 한 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외국 사례라 좀 와닿지 않으시나요? 그럼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경기 광주군선거구에서는 3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되었습니다. 2008년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그냥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도,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결정타가 되기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한 표가 언제, 어떻게 삶을 바꾸고 결정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투표참여를 통해 우리는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를 내 손으로 선출하고 국가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입장을 대변해 줄 후보에게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를 포기해버린다면 더 이상 대표자들이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유권자가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다양한 생각들이 선거를 통해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투표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투표참여는 단지 선택할 권리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우리의 목소리 내기'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시문제를 포함한 교육,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환경, 대체 복무제를 다루는 국방, 청년실업 문제를 주관하는 노동 분야 등 젊은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다양한 영역이 많습니다.

우리는 투표참여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그 무게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하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투표인증샷' 을 보신 적이 있나요?

투표인증샷은 선거일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에 참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기특한 내 자신을 표현하는 일, 바로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유권자가 되신 여러분도 이번 선거에서 투표인증샷을 남겨 국가의 주인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어렵지 않아요!

- | | |
|--------------------|----|
| 1.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16 |
| 2. 선거과정 한눈에 보기 | 18 |
| 3. 투표, 이렇게 합니다! | 20 |
| 4. 개표와 당선인 결정 | 26 |



선거, 어렵지 않아요!



1.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선거에 참여하게 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를 위해 구성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대표는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한편,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불리는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시·도교육청의 대표인 교육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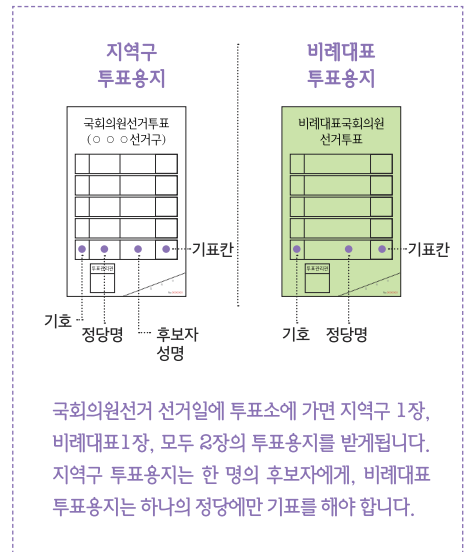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가 5년이며, 전국을 단위로 선출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는 4년이며 300명을 선출합니다. 이 가운데 253명은 각 지역 선거구마다 1명씩 선출하는 지역구의원이고, 47명은 전국을 단위로 선출하는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지방선거를 통해 한꺼번에 선출합니다. 그래서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부릅니다. 교육감 또한 임기가 4년이며 지방선거에서 같이 선출하게 됩니다.

공직선거의 종류

	선거일	선거가능 나이
	대통령선거 2022. 3. 9. 임기 5년	
	국회의원선거 2020. 4. 15. 임기 4년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2022. 6. 1. 임기 4년	

각 선거는 대표의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지방선거), 50일 전(국회의원선거), 70일 전(대통령선거)을 기준으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임기 차이로 인하여 대부분 교차해서 선거가 실시되지만 같은 해에 임기가 끝나면 한 해에 두 개의 선거가 함께 실시되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2022년이 되면 대통령선거(3월)와 지방선거(6월)를 같은 해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공직 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 이렇게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한 표, 색깔이 다른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합니다.

지역선거구는 행정구역인 구·시·군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에 선거구마다 인구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최대 2 대 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투표할 지역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보통 하나의 구나 시가 하나의 선거구가 될 때는 '종로구선거구'와 같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구에 두 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운대구갑선거구', '해운대구을선거구' 등으로 구분해 이름을 붙입니다. 지방의 여러 구·시·군이 묶여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전부 포함해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 이렇게 부릅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1명만을 선출하기 때문에 후보자 중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만일 동점자가 나왔다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구분해 선출합니다. 비례대표는 교육, 노동, 여성, 청년, 국방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 선출하는 직능 대표적 성격을 가집니다. 우선 각 정당들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후보자를 1:3·5번과 같이 홀수 번호에 배정하면서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과 비례대표후보자들을 보고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정당투표를 통해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을 기준으로 법에서 규정한 의석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배정되고, 배정된 수만큼 각 정당의 후보자 명부 순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선거과정 한눈에 보기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일이 중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공직선거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거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은 유권자와 후보자가 있어야 되고, 선거운동도 해야하며, 투표와 개표 과정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인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 각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즉, 선거권자들의 명단을 의미하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며 이름·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이 적혀있습니다. 또한 이 명부를 토대로 선거일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이 신청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정당이 순위를 정한 후보자 명부를 함께 첨부해 신청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가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후 접수하고 후보자를 공표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후보자 등록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탁금이라는 것을 납부해야 하는데,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1천 500만원입니다. 이 기탁금은 만약 후보자가 선거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 득표하게 되면 득표비율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선거공보



선거벽보(포스터)



선거연설·대담



후보자토론회

‘선거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3일) 동안 선거공보, 선거벽보, TV 토론회,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 명함배부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합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금요일, 토요일) 실시됩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 마감 후 투표함이 개표소에 옮겨지면 시작됩니다.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의 유효·무효 판정을 하고, 후보자나 정당별로 분류해 득표수를 집계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개표결과가 확정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정당에 대한 표의 경우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3. 투표, 이렇게 합니다!

이제 투표소로 가볼까요? 우선 언제, 어디서 하는지 확실히 알고 가야겠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5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투표소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 학교나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 투표소는 선거일 전 선거공보와 함께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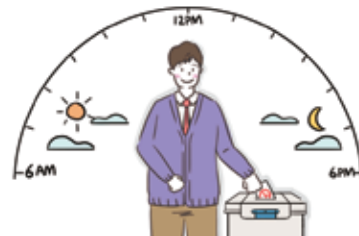
- ①
투표 날짜를
미리 확인합니다.



- ②
내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합니다.



- ③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투표를 합니다.



참, 투표소에 가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증'인데요, 투표소에 들어가면 투표하기 전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하거나 중복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인데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신분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는?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사립학교 학생증 포함)
-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1.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2. 군부대가 기록·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등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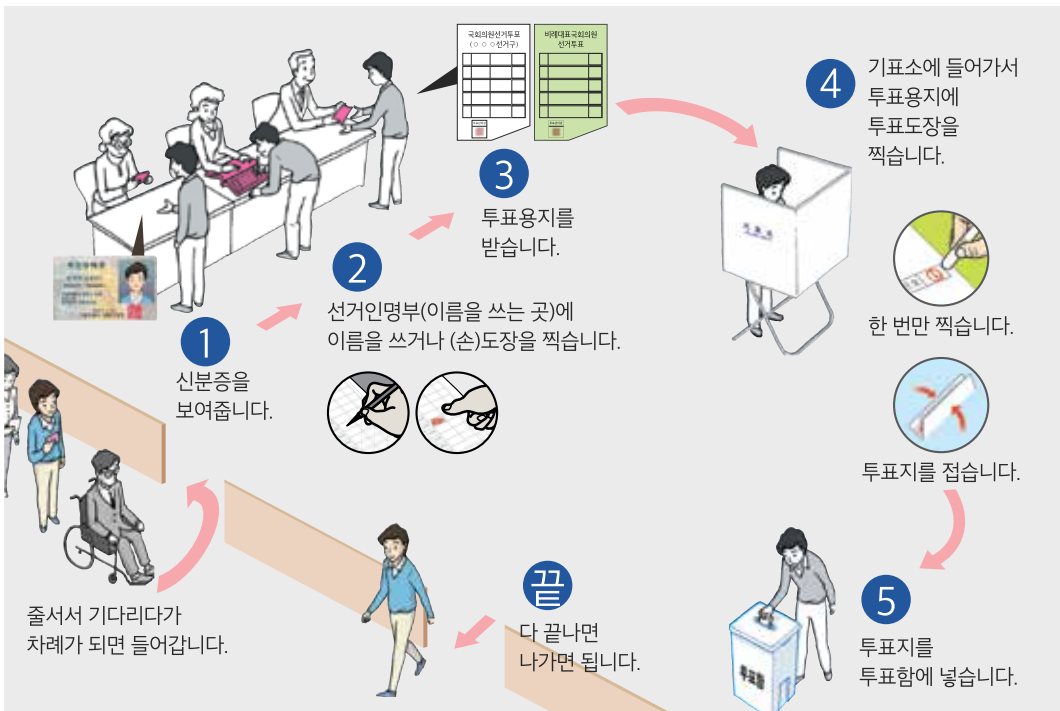


투표하는 방법

자, 그럼 투표소까지 잘 찾아오셨으니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우선 투표소에 입장해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어 본인 확인을 한 후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지역구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2장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투표소에는 기표소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차례를 기다려 기표소로 가면 됩니다. 만약 앞 사람이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면 약간 떨어져서 기다려주는 센스를 발휘해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기표한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이 경우 친구나 부모님과 투표소에 함께 갔더라도 기표소에는 혼자 들어가서 기표해야 합니다. 단, 장애 등으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투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큰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표소에는 투표과정을 진행하는 투표사무원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투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만일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투표참관인은 즉시 이의제기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과정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 시 주의사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도 내 의사가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투표를 했어도 올바르게 찍지 않으면 그 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비치된 투표전용도장인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나 정당명 옆에 기표해야 하는 네모 칸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만일 네모 칸을 벗어나거나 어느 후보에게 찍었는지 판정할 수 없게 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표는 각 투표용지에 한 번만 해야 합니다. 여러 후보자 또는 정당에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내가 투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투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안 되겠죠!

올바른 투표방법



반드시 투표전용도장으로 찍어야 합니다.



펜이나 도장으로 표시하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용지에 투표도장을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투표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 번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도장을 네모 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투표도장을 네모 칸 밖에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면 사전투표를!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기간(4월 10, 11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선거일 투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는 동네에서 사전투표를 한다면(관내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 중구에 사는 사람이 부산 서구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관외선거인)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에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다시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내서 개표하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내가 관내선거인인지 관외선거인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안내도우미가 어디에 사는 분인지 물어보고 친절하게 안내해줄 겁니다.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2장 (지역구, 비례대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투표소를 나감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2장 (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봉투 (주소라벨 부착)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투표소를 나감

해외에서는 재외선거를!

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재외선거인) 해외에 머물고 있는(국외부재자) 사람들도 투표하겠다는 신고나 신청을 하면 선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외선거라는 특성상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만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투표기간도 4월 15일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해당 국가의 특성상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4월 1일부터 6일(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으로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만 가능합니다. 몸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원칙

선거에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치러져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요. 어떤 원칙이 있는지 알아보시다.

보통
선거

국민이면 누구나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성별, 인종, 언어, 재산,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평등
선거

선거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합니다.

직접
선거

선거권자는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비밀
선거

선거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4. 개표와 당선인 결정



개표

투표가 끝난 후 우리의 한 표 한 표는 어떻게 집계될까요? 이제 개표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6시,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하고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보통 개표소는 구·시·군내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설치되며, 각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송되면 확인 후 본격적인 개표를 시작합니다.

먼저,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표소 입구에서 각 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과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서 접수합니다.

접수된 투표함을 '개함부'에서 열어 개함상에 투표지를 쏟은 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따로 구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를 통해 정당별·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합니다. 보통 100매 단위로 묶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기계로 판독하기 어려운 투표지는 재확인대상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정당별·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로 넘겨집니다.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통해 1차 분류된 투표지의 매수를 정확히 세고 육안으로도 전부 확인합니다. 재확인대상 투표지의 경우 육안으로 분류·심사·집계해서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의 경우 정당별·후보자별로 분류해서 집계합니다.

이렇게 집계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정당별·후보자별로 작성된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등을 최종적으로 검열하게 됩니다. 검열이 끝나면 위원장은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표결과를 개표참관인과 언론기관에 배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개표가 마감되면 투표지를 봉인해서 일정기간 보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개표 과정은 투표와 마찬가지로 개표사무원, 개표관람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진행됩니다. 또한 개표관람증을 받으면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1. 접수부

투표함 확인·접수

투표참관인과 함께 도착한 투표함 및 투표 관게서본 확인·접수



2. 개함부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개표참관인과 함께 하여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이상유무 확인



개함 및 투표지 정리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어 개함에 투표지를 옮긴 후 기지반에 정리하고 색상별로 구분



3. 투표지 분류기운영부

정당·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 운영



직재할 처리 및 투표지 분류

4. 심사·집계부

투표지 심사·집계

유효·무효 투표지계산 및 개표상황표 작성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전량 육안으로 분류·심사·집계



분류된 투표지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득표수 이상유무 등 현황 육안으로 심사·확인

5. 개표상황표 확인식

개표상황표 작성상황 적정여부 확인

계수의 정확성 여부, 개표상황표기 수성일 경우 정확성지 여부 등



정당·후보자별 득표상황, 책임사무원·정정자 서명 등

6. 위원 검열식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홍격한 위원은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검열

위원장 공표



7. 기록·보고식

개표상황 보고 및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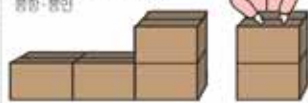
개표상황을 압력 보고한 후, 개표결과를 언론사, 개표참관인에게 제공



8. 정리부

투표지 포장·정리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투표구별로 구분 정리, 보관 상자에 넣고 봉합·봉인



※ 개표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들이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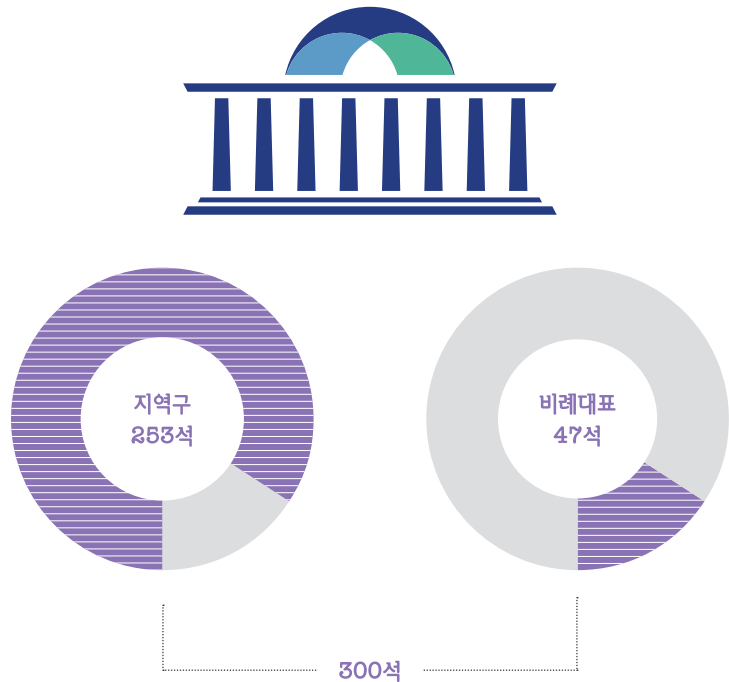
여기서 잠깐, 투표지분류기란?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해주는 장치로써 투표지를 이 장치에 투입하면 후보자별로 지정해놓은 적재함에 모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표가 되지 않았거나 여러 군데 기표되어 있어 분류가 되지 않은 투표지의 경우 재확인대상 분류적재함에 모이게 되며, 이 투표지는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따로 분류해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판정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분당 300매의 투표지를 분류해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며 정확도가 높아 개표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당선인 결정



개표소에서 개표가 끝나면 후보자별·정당별 득표수가 집계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당선됐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별 득표결과를 전국적으로 합산한 후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해당 정당이 차지하게 된 의석수만큼 정당의 후보자 명부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다소 까다로워 졌습니다.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를 포함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47명의 비례대표 중 30명만 준연동 방식(연동비율 50%)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정당득표율이 20%이고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라면, A정당은 300석 중 20%인 총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 10석을 뺀 50석의 절반(50%)인 25석이 연동배분의석수가 됩니다. 준연동형으로 배분되는 30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30명을 제외한 17명의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해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1. 선거운동이란?	32
2. 유권자의 선거운동	34
3. 불법 선거운동	36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1.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후보자나 정당이 “저에게 투표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거운동의 목적은 ‘당선’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공약을 써 놓은 벽보가 거리에 붙여지고, 후보자들은 현수막을 내걸습니다. 명함을 배부하기도 하고 유세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모두가 선거운동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선거운동방법



선거사무소 설치



전화·문자전송



e-mail 보내기



명함 배부



어깨띠 등 소품 이용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거리유세
(공개장소 연설·대담)



미디어광고



TV토론



기타 법이 허용하는 방법

정당이나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심, 응원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 유권자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유권자도 응원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유권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과 교사는 법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당, 후보자,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
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는 YES!



단, 공무원·교사는 NO!

또 하나 선거운동은 당선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상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비방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선거운동!



거짓사실이나 비방은 NO!

2. 유권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18세 선거권자인 고등학생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18세 이상 선거운동 YES!



18세 미만 선거운동 NO!

그렇다면, 후보자가 아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 그 사람을 더 잘 알릴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일이 가장 쉽지 않을까요?

직접 만나서 말로 하셔도 좋고 전화를 걸어도 좋습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의 부탁을 받아 다수인이 모인 공개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캠프에 들어가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선거운동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이번 선거는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선거운동기간이란 실제 길거리에 벽보가 붙고 유세차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사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좋고,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유권자는 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한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일들이 벌어지면 선거운동 문자가 홍수처럼 쏟아져 선거가 무질서해지고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법정 선거운동기간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직접 투표나 지지를 부탁한다.



집회, 모임에 이르지 않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한다.



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부탁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다.

평상시



문자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부탁한다.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 사이트를 올린다.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를 통해 리트윗, 공유의 방법으로 전달한다.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린다.

3. 불법 선거운동

유권자라면 누구나 후보자, 정당, 정책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호 모순되는 말 같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만일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처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겠죠? 그렇다면 불법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상대 후보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방



특정지역·지역인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 모욕글 게시

우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은 후보자나 그의 가족과 같은 주변인을 헐뜯거나 거짓사실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선거질서는 유지되지 못하겠죠. 이것은 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다는 열정이 과하다 보면 각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의 문화에서 보면 유행하는 과잠(학교나 학과 이름이 써있는 점퍼)처럼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을 입거나 상징물을 부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새내기 유권자로서 폼 나는 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입니다. 물론 상징물이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발표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막 퍼 나르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후보자나 정당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질서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이 경우 그 여론조사를 공표한 측도 처벌 받지만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도 똑같이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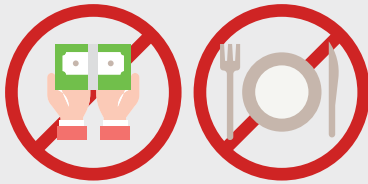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SNS, 유튜브와 같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뉴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좋아하니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메시지들을 만들어 보급하거나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잘못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 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뉴미디어의 특성상 내가 만든 또는 내가 전달한 잘못된 메시지들이 한 번 옮겨지면 짧은 시간에 견잡을 수 없을 만큼 퍼져버린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정말 조심해야 할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명심하세요. 혹시 내가 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다면 국번 없이 '1390(선거콜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선거범죄를 보는 즉시 신고해 주세요.
-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과태료와 포상금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도 많게는 3,000만원까지! 후보자는 물론 그의 가족 또는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누가되었든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아빠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친구가 잘 부탁한 다며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원짜리 음식을 먹으면 50배인 5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겪게 될 때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신고한 내용의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의 차등은 있습니다만 최고액이 무려 5억 원까지라고 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익명으로 보장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V

올바른 유권자가 됩시다!

1. 내가 꿈꾸는 세상	42
2. 선거정보 알아보기	46
3. 정당·후보자 분석하기	48
4. 내가 만들어 가는 선거문화	52

IV

올바른
유권자가 됩시다!1.
내가 꿈꾸는
세상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선택은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각각의 대표자들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권력을 바탕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또한 정당이라는 이름의 정치 집단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청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의 요구를 법과 정책이라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서로 갈등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가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살아가고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없다면 나를 대변할 대표를 선택할 기준도, 대표에게 요구할 정책도, 그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아주 큰 추상화여도 좋고, 아주 세세한 정밀화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좀 쉽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선 각 정당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내 생각을 만드는 일은 어떠한 가치를 우선시 하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정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 영역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요? 내 생각과 일치하는 점이 있나요?

좀 더 좁혀 볼까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각각의 영역에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현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들은 분야별로 중요 공약들을 제시합니다. 우선 이것부터 살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맞닿은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신이 꿈꾸는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국가의 대표를 선택하는 권리를 부여받은 당신, 내가 바라는 지역의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 당신.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여러분의 선택에 간섭하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강요하고자 한다면 “제 선택은 제가 할게요!”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대표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은 대한민국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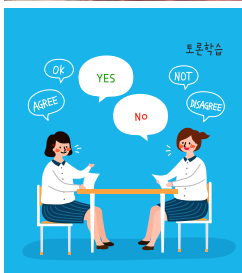


그렇다고 ‘부모님, 선생님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해야겠군’ 하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지식과 방법들을 익혀왔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것을 사회화라고 부르죠. 학급 또는 학교 선거만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처음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생소하고 미숙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등등. 그러나 선택과 결정까지 그분들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민주시민이니깐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람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이 공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잘못된 이야기로 상대를 현혹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양한 주장들을 살피고 경청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주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폄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서 나의 생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최선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차선의 올바른 선택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주는 분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동무 정도로 설정해 두세요. 특정한 사상을, 특정한 이념을, 특정한 정책과 평가를 강요한다면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적어도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들어가며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된다는 것, 단지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넘어 생각의 범주를 '나'에서 '우리'로 확장해 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2. 선거정보 알아보기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만들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정당과 정책을 선택하려면 정보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자기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잘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정보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정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정당 홈페이지 둘러보기

정당은 현대 정치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주체이며, 권력 획득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권력이란 선거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어떠한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별 후보자 외에도 정당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선거정보입니다. 정당 홈페이지 소개 글을 통해 정당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검색하기(<http://policy.nec.go.kr>)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한눈에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과 공약을 쉽고 편하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볼 수도 있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정책과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공약제안에서는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코너도 있으니 꼭 들어가 보세요! 정책과 공약을 찾아보는 것, 선거정보 습득의 기초이며 올바른 선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TV토론 시청하기

바쁜 일상 속에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안방에 앉아서 그리고 모바일을 통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의 토론을 시청하는 것이 아닐까요? 각 정당과 후보자별 정책을 일일이 살펴볼 수 없다면 TV토론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비교해 보세요. 지면으로 보지 못하는 생생한 내용들을 어떠한 논리와 생각으로 실현해 가려고 하는지 편하고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 또는 정당 간에 누가 더 진실 되고 실천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면을 보면 재미와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생방송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즐겨보는 유튜브 등을 검색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선거벽보 둘러보기

선거기간이 되면 등·하교 길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후보자들의 선거벽보입니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들이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첩부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은 물론 경력, 구호, 핵심공약 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쉽고 간편하게 후보자와 정당을 비교해볼 수 있겠죠? 선거벽보 속에 나의 주장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처벌받으니까 눈과 마음으로만 보세요!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읽어보기

선거기간동안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라는 이름의 정당·후보자의 홍보물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여기에는 선거벽보에 담긴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선거정보가 담겨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세금은 잘 냈는지, 군대는 갔다 왔는지, 전과는 없는지 등 대표로서의 성품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내세운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살아온 흔적들을 통해 대표로서의 경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도 좋겠죠! 식사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부모님과 함께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펼쳐놓고 이야기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이버선거역사관 가상 선거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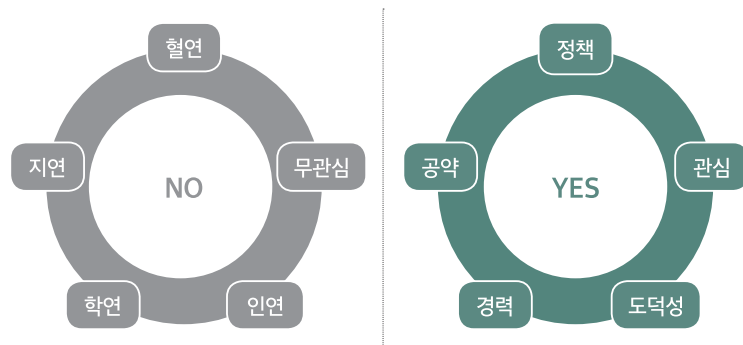
새내기 유권자가 되고서 살짝 긴장되는 순간은 아마도 투표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닐까요? 많이 듣고 배웠지만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에 접속하시면 선거체험관에서 가상으로 투표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설명을 듣고 쉽게 투표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거정보와 체험 코너도 있으니 게임하는 시간에 짬을 내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체험보다 좋은 학습은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3. 정당·후보자 분석하기

선거에서 합리적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택을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선택에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이란 보다 나은 대표를 선택하기 위해 얼마나 따져보고 고민해서 결정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대표자를 선택하였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우리 학교 출신이라서, 나랑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그 후보자의 성품이 어떤지 그리고 법률을 만들어낼 능력은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한다면 그것을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한 후에는 그 대표가 잘못한다고 욕하고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선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따져 묻고 고민해야 할까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당도 많고 후보자도 많아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 핵심 공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각 정당들은 홈페이지, TV토론, 언론 등을 통해 핵심공약을 발표합니다. 각 후보자들도 선거공보나 벽보에 자신의 주요 공약들을 쏟아냅니다. 이런 공약들은 그냥 눈으로 읽어서만은 장단점이나 차이를 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당별로, 분야별로, 후보자별로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해 보세요. 그 차이를 확인하면 내 선택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각 정당별 10대 정책 찾아보기
10대 정책
우선순위 비교하기

분야별 10대 공약 찾아보기
내가 원하는 공약 점수
매겨보기

후보자 공약 순위 매기기
같은 공약
차이점 찾아보기

정당정책에 대한
언론 평가 기사
읽어보기

관심 공약 친구들과 토론하기
토론 후 공약에 대한
순위 매기기

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이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정당·후보자 정책비교 방법

개별 후보자들이 어떠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올바른 대표를 선택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는 납세, 국방, 근로, 교육의 이력을 살펴봐야겠죠.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해왔는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과 이력은 없는지, 사회에 공헌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루두루 검증해 보아야 좋은 대표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능력도 성품도 좋은 대표가 필요하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선거통계시스템에 들어가 보세요. 쉽게 납세, 국방, 교육 이력 등 개별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당이란?

정당(political party)은 정치적 이념과 주장이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집단입니다. 정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얻기 위해 선거에 참여합니다. 또한 세력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조직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제8조)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에서 보조받습니다.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및 학교 교원 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당원 가입 신청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입당은 정당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반면 탈당은 탈당 신고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 선거권이 있는 여러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더라도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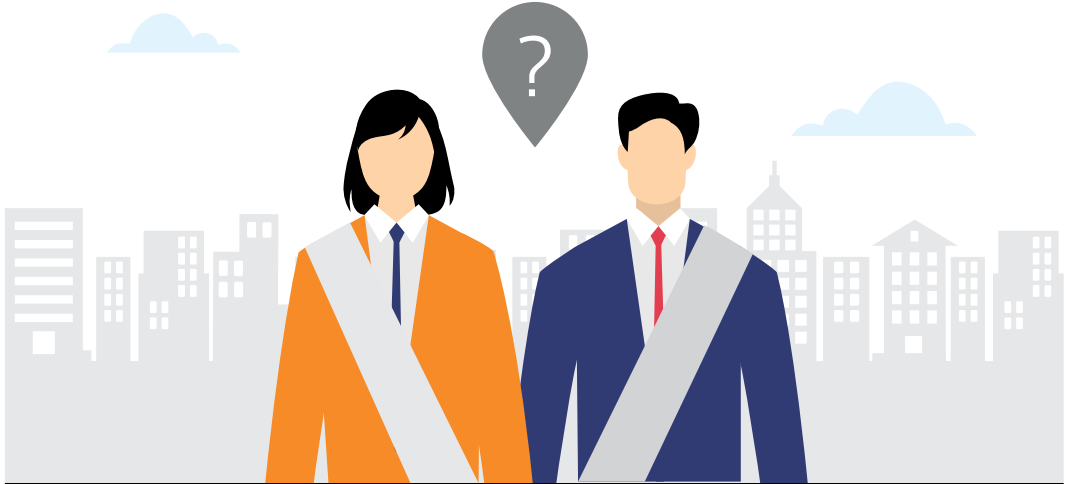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살펴보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이들은 국가적 정책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체적인 발전계획도 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는지 직접 알아보는 것은 힘들겠죠. 이럴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 이슈공약지도 코너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이슈공약지도’는 그동안 누적된 정책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시·도와 구·시·군별로 정책공약 이슈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지도 형식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하거나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제안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정책과 공약을 찾아보는 것, 선거정보 습득의 기초이며 올바른 선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납세·병역·학력 등 후보자 정보



후보자가 보유한 현금, 채권, 부동산 등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신고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후보자 본인의 국내(최종)정규학력과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후보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병역 사항 및 이를 증명·확인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요.



후보자 본인과 직계가족이 최근 5년간 납부 또는 체납한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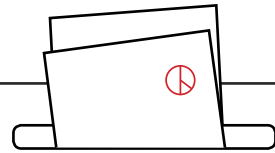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위 후보자 정보는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4. 내가 만들어 가는 선거문화

올바른 유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거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잘못된 선거문화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선거권이 권리라면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선거참여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는 가장 쉽고도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투표참여 캠페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캠페인이며, 선거권이 없는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선배를 만나 개인적으로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대화를 나누셔도 되고 SNS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말이나 퍼포먼스를 하셔도 좋습니다. 선거일에 SNS를 통해 투표인증샷 올리기 놀이 하는 것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가다보면 우리만의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는 일은 안 돼요. 사전투표소나 일반투표소에서 100미터 이내에서도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는 없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참여를 권유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 또는 사진이 들어간 물건을 들거나 부착하고 있어도 안 돼요.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할 수 있는 것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없이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것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 촬영하는 행위



어깨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 행위



확성기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 행위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나 공약을 만들어 실현되도록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잖아요. 친구들과 희망하는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전달해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공약제안도 활용해 보시고요. 적극적인 참여문화가 선거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경쟁이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질서 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온갖 흑색선전과 악플이 난무하는 인터넷을 정화하는 캠페인도 좋은 선거문화를 만드는 일이 되겠죠. 불법선거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거나 캠페인 단체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도 작은 노력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문화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인터넷, SNS 그리고 가짜 뉴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같은 정보도 대부분 포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뉴미디어는 현재 가장 실용적인 선거운동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수없이 많은 뉴스와 정보들이 뉴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보급됩니다.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큼니다.

그러나 뉴미디어는 편리한 정보 습득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에 못지않은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큼니다. 우선은 SNS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합리화하기 위한 뉴스만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로 인해 일방적 편견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럴 경우 진실이 왜곡될 수 있으며, 특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퍼지기 시작하고 나면 견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전파되기 되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뉴미디어 활용의 부정적 현상



정보 왜곡



편향성



무비판적 수용



거짓사실
확대 재생산



왜곡 메시지
오용 및 악용



부정적
인식 강화

선거에서 뉴미디어를 활용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거짓사실 보도, 가짜뉴스, 그리고 잘못된 자극적인 메시지의 수용입니다. 다양한 인터넷 매체 환경에서 뉴스라는 이름을 가진 상업적이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들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정보를 습득하고 해독함에 있어서 늘 비판적 시각과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상반되는 시각을 비교하여 읽어 보는 것은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뉴미디어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에 대해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극적이거나 극단적인 메시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정말일까? 그 근거는 뭐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경계해야 할 메시지



비난과 욕설



극단적
표현과 평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출처 없는
임의적인 내용





질문 있습니다!

1. 질문 있습니다!	58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일정표	62

1. 질문 있습니다!

Q1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선거운동은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도 학급 친구들과 함께 정당이 나 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어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Q3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기숙사에서요?

- 학교의 교실은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Q5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도 위반되나요?

-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식사를 사준다면 사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정중히 거절합시다.

Q2

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14일까지)에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4

옷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배지를 부착하거나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배지 등 표시물을 배부·착용할 수 없습니다.

Q6

학교 동아리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해 공약을 듣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될까요?

- 동아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서 후보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Q8

후보자 명함을 제가 배부할 수 있나요?

-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 명함은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후보자의 부모와 자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지정된 사람들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명함 배부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Q10

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소식이나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나 영상이 거짓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하겠죠.

Q7

쉬는 시간에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4월 14일)동안 반 친구들 끼리 서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반 친구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9

투표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 투표소 입구에서는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Q11

학교 정문에서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홍보 피켓을 들고 있어도 되나요?

-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들어간 피켓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12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 나르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선거에서 당선·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거나 비방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3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로 선거유세 노래를 다운받아 틀어놓고 친구들에게 OO당을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선거유세 노래를 다수가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14

사전투표는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주 금요일과 토요일 2일간(4월 10, 11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Q15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집으로 우편 배달되는 선거공보 속에 투표안내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만일 잘 모르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16

개표소에 직접 가서 개표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관람증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Q17

투표참여 캠페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 투표참여 캠페인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집집마다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행위
 - 현수막, 인쇄물 등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 성명, 사진 등을 나타내어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Q18

투표참여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나요?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한 다음 투표사무원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19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 했는데 문화상품권을 주네요. 받아도 되나요?

- 자원봉사자는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됩니다. 호의라 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받으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Q20

내가 속한 동아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선언할 수 있나요?

- 선거권자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동아리나 동아리 대표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21

방송반 학생이 점심시간에 학교방송을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영상을 방송할 수 있나요?

-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19.11.17부터 '20.2.15.까지	일 /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5.까지	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2.26.부터 3.6.까지	수 /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3.16.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3.24.부터 3.28.까지	화 /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3.26.부터 3.27.까지	목 / 금	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1.부터 4.6.까지	수 /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4.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4.3.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5.까지	일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4.10.부터 4.11.까지	금 /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4.15.	수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선거일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발행일 2020년 2월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 화 031)296-9831
디자인 (주)프리비 02-2274-1492

